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0

제출연월일 : 2008. 1.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 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하여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간에 부담비율을 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기초노령연금법」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와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11. 2. ~ 11. 21.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제2조 관련)

1. 대전광역시의 부담비율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		
구 분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1 -1 -7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5
자치구 재 정 자주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55	100분의 65	100분의 75
	100분의 70 미만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2. 자치구의 부담비율 : 제1호에 의한 대전광역시의 부담비율 외의 비율

3.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자체수입 + 자주재원 ① 산식 =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05세 이상 노인인구 수 ① 산식 = 전체 인구 수
노인인구 비율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 된 인구수를 말한다.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관 련 법 규

□ 기초노령연금법

-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 시·군·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
 - 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별표]

국가 부담 연금비용의 비율(제16조제1항 관련)

1. 산정기준

구 분		특별자치도·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재 정 자주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특별자치도.	자체수입 + 자주재원 ① 산식 =
시·군·구의 재정자주도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① 산식 =
노인인구 비율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를 말한다.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 28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1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2008. 1. 14

다. 상 정 일 자 :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1.23)

상정, 질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1.28)

심사,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신숙용)

1. 제안이유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하여 자치구의 노인인 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간에 부 담비율을 정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제정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 제2호 및「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부담액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시·구간 부담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 총 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을
- 제2조는 시와 구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을 정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 수 및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비용의 시와 구의 부담비율을 6 : 4로 정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부담 연금비용의 비율 산정기준과 동일한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나 노인인구 비율이 상승할 시는 시비부담 비율이 자연적으로 증감되도록 하는 등 부담비율에 탄력성을 기하였으며,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대구시, 인천시, 광

주시, 울산시의 시비 부담비율도 우리시와 같이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그러나, 복지사회 지향으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의 수요 증가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필 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 의 요 지**: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90

제안연월일 : 2008. 1.

23.

제 안 자: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2022년도의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예상 비율은 14.2%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조 관련 별표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 제2조에 부담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를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관련 "별표"를 삭제함(안 제2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부담비율)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를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관련 [별표]를 삭제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2조(부담비율) 「기초노령연금법」제19 제2조(부담비율) 「기초노령연금법」제19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담금 중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생략)

[별표]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제2조 관련)

[별표]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제2조 관련)

1. 대전광역시의 부담비율

	자치구	'의 노인인구	⁴ 비율
구 분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5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55	100분의 65	100분의 75
100분의 70 미만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미만	구 분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80 이상 50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미만 100분의 70 미만 60	구 분 100분의 14 이상 14 미만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80 이상 50 55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55 65 80 미만 100분의 100분의 70 미만 60 70

2. 자치구의 부담비율 : 제1호에 의한 대전광역시 의 부담비율 외의 비율

3.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자치 구의 재정 자주 도	①산 자체수입 + 자주재원 식=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 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 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 인구 비율	①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식= 전체 인구 수 ②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 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수 아 정

제1조(생략)

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부칙(생략)

[삭제]